##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84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이연희・박 정・박상혁

김정호 · 정성호 · 김남희

문금주 · 한민수 · 이기헌

한준호 • 이춘석 • 허 영

허종식 • 윤종군 • 어기구

김윤덕 • 홍기원 • 박홍배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공공 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제도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의 토지비축 신청 및 당해연 도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2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사업별로 사업계획 확정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비축 신청 접수시기에 따라 동 제도의 활용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2023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지자체만 신청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음.

정부가 공공토지비축제도의 실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결과 올해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신청물량이 평년 대비 확대 되었으나 여전히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의 수립과 수요기관의 토지비축 신청을 분리하여 토지비축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 아가 토지비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제도 활성화 및 국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5조).

#### 법률 제 호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연도별"을 "2월 말까지"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5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비축 신청된 토지를 비축대상토 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①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u>2</u> 월 말까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u>다</u>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시
	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u>또한 같다).</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	따라 비축 신청된 토지를 비축
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	대상토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
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우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u>다.</u>
<u>정한다.</u>	
⑥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6
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u>제1항 및 제4항</u>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⑦ <u>제1형</u>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제	
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하	
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시·도지사, 공익사업시	
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b>.</b>